

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

수신자 건설업체 1,000개소 대표이사
(경유) 안전부서장
제목 「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」 관련 자료 제출 안내

1. 관련:

가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①항7호

나.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-20호 「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」

2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 결과가 반영될 예정입니다.

3. 따라서, 2015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(제출 서류 등)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반드시 정해진 기간(**도착일 16.2.29까지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추가·보완서류로 인정되지 않음**)내에 실적 평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(공단홈페이지 www.kosha.or.kr_정보공개 → 산업재해유확인 →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조회에 등재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및 세부지침 참조)

4. 실적제출 시 제출 공문에 **반드시 담당자명과 전화번호를 기입**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평가 미반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제출처: (681-230)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(북정동)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실적평가 담당
(문의: 052-7030-674, 668)

붙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‘15년도 실적평가 자료 제출 안내 1부. 끝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

부장대우 **이병열** 건설안전경영부장 **박상복** 건설안전실장 01/27
고재철

협조자
고객결재

시행 건설안전경영부-15 (2016.01.27.) 접수 ()

우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(북정동) / <http://www.kosha.or.kr>

전화 052-7030-674,668 /전송 052-7030-320 / mrspider@kosha.or.kr / 공개

대표번호 052)703-0500 1644-4544 <http://www.kosha.or.kr> /고객참여

o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,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e-mail:gamsa@kosha.net, 인터넷:www.kosha.or.kr/사이버감사실, 익명신고시스템(레드휘슬))

「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」

2015년도 실적 평가 자료 제출 안내

① 평가대상 건설업체
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 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업체
 - '15.12.31일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,000위 이내인 건설업체

② 평가대상 기간

- 2015.1.1 ~ 2015.12.31

③ 평가대상 구분

- (“가”형) 평가대상 기간에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업체
- (“나”형) 그 밖의 건설업체(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평가 제외)

④ 평가자료 제출

- 실적평가 자료를 아래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
 - (681-230)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(북정동)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실적평가 담당
(문의: 052-7030-674, 668)

5 제출 기간

- 2016.1월 ~ 2016.2.29일까지 ('16.2.29 도착일 기준)
- 도착일 이후의 추가·보완서류는 제출서류로 인정되지 않음

6 제출 서류

- 공문을 포함하여 고시 별지 서식 및 아래 증빙서류 제출

평가항목	제출서류	증빙서류
1.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등		
-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	없음	없음
- 사업주 행사 참여	[고시 별지1호 서식]	• 대표이사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 증빙서류 (행사별 계획 및 결과서류)
2.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	[고시 별지2호 서식]	• 정규직 안전관리자 근로계약서 또는 정규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내 전산자료 등
3. 안전보건 조직	[고시 별지3호 서식]	• 본사 전체 조직도 • 안전보건전담 조직의 업무분장표 • 본사 안전보건 업무 수행사실이 확인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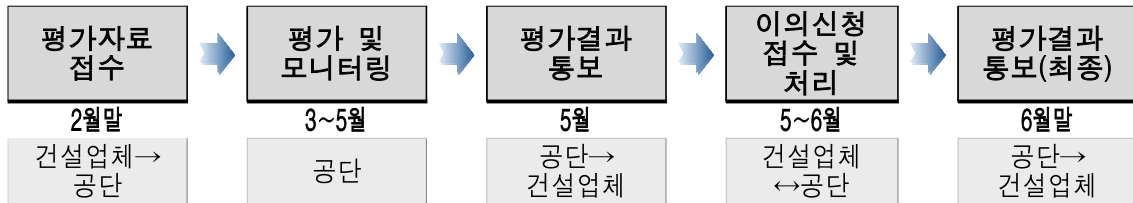
- 공단의 실적평가 시 제출 실적의 사실 관계 확인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(연락처)를 제외한 제출자료 상에 표기된 모든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함

7 실적평가 관련 고시 및 세부지침 안내

- 제출양식 또는 실적평가 기준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 → 정보공개 → 산업재해율확인 →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조회에 등재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및 세부지침 참조

8 평가절차

-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며, 세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

※ 모니터링: 건설업체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자가 업체 본사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절차

9 불이익 처분

-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실적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준의 평가점수 미부여

※ (예) 안전보건조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: 안전보건조직 점수 0점
안전·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: 정규직 비율 점수 0점

-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완료 이후, 허위나 거짓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연도의 평가 합계점수를 소급하여 영점 처리하고
-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가점 미부여

10 유의 사항

- 실적 제출 시 제출 공문에 반드시 담당자명과 내선번호 기입
- 근로계약서 등 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접수가 되면 공문서로서 법적효력이 발생하고 서류를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13조에 의거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영점처리 되며 이후 변조된 서류 관련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